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1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 강명구·최보윤·엄태영

김 건・배준영・이성권

김기현 · 김정재 · 조은희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,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 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.

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, 장애인의 게임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상황임.

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,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,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적용하며, 제1호 및 제2호를"을 "적용하고, 제2호의2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호 및 제2호"를 각각 "제1호, 제2호 및 제2호의2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제1호 또는 제2호"를 "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2호의2"로, "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"를 "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개발비"로 한다.

2의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로서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,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, 색약 지원 기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

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

- 1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
- 2) 그 밖의 경우: 100분의 40
- 나.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 한 비율(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 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개 발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 · 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 2월 31일(제2호의 국가전략기 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 우 2031년 12월 31일)까지 발 생한 해당 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제1호 및 -----적용하고, 제2호의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2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생한 해당 연구 · 인력개발비에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대해서만 적용하며, 다음 각 호 적용하다. 중 둘 이상을-----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 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장 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로서 장 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, 자막 및 화면해설 기 술, 색약 지원 기술 등을 포 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장애인게임접근 성향상기술"이라 한다)을 얻 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게임접근성향 상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에 발생한 장애인게임접근성 향상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 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 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

가.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

1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: 100분의 50

2) 그 밖의 경우: 100분의40

<u>나.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</u> 액에서 장애인게임접근성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 의 연구 · 인력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연구·인력 개발비"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 · 인력개발비가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 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· 인력 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· 인력개발 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

	향상기술연구개발비가	<u>차</u>
	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	<u></u>
	로 정하는 일정배수를	
	한 비율(100분의 10을	
	과하는 경우에는 100분	
	10으로 한다)	
3	제1호, 제2호 및 제2호의2	
0.		
	<u>1호, 제2호 및 제2호의2</u>	
	12, MOS X MOS 70	

가. • 나. (생 략)
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 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 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(區 分經理)하여야 한다.

⑤ · ⑥ (생 략)

7	가.	• 나.	(현형	빙과	같	음)	
2	•	3	(현호	행과	같.	승)	
4	제]	1항저]1호,	제2	호	또는	제2
호 9	의2						
λÌ	1 1	٦٦	o) -)	っ) <u>人</u>	പ്	7. all H	ւերյ

-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장 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연구개 발비-----

-----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